

黃海道 載寧 海澤 (황해도 재령 간척지)

김 주 창

(kljckim@hanmail.net)

KCID 학술 및 기술교류분과 부위원장
한국농공학회 고문

재령 간척지, 즉 재령 해택(載寧 海澤)에 대한 기록은 두 곳에서 찾을 수 있다. 하나는 학봉(鶴峯) 김성일(金誠一)의 재령 해택에 대한 시(詩)이고 다른 하나는 조선왕조실록 인조조의 기록이다.

김성일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2년 전인 1590년에 정사(正使) 황윤길(黃允吉)과 함께 통신부사(通信副使)의 직책으로 일본에 갔다가 이듬해에 돌아와 일본의 국정을 복명할 때 “왜가 반드시 침입할 것”이라는 황윤길과 반대로 “왜가 군사를 일으킬 기색은 보이지 않는다”고 상반된 보고를 하여 잘 알려진 인물이다. 그가 그러한 보고를 한 것은 민심이 흥흥할 것을 우려한 때문이란 변명도 있지만 왕과 대신들이 오판을 하게 한 잘못은 면할 수가 없을 것이다.

김성일은 1538(중종 33)~1593(선조 26)의 사람으로 1583년에는 사간(司諫)이 되고, 황해도 순무어사(巡撫御史)로 다녀와 군기관리(軍器管理)를 소홀히 하고 창곡(倉穀)을 부실하게 한 황주목사 윤인함(尹仁涵)의 파직을 건의한바 있다. 아마도 이때에 황해도에서 재령 간척지(재령 해택)를 보고 쓴 것으로 보이는 다음의 시가 있다.

재령 해택

기름진 넓은 땅이 바닷가에 접했는데,
가난뱅이 땅이 없고 부자가 다 차지했네.
어찌하면 삼왕의 법 다시금 회복시켜,
백성이 배 두드리는 태평 시절 다시 보나.

載寧 海澤

膾膾原田接海邊 貧無錐地富連阡
若爲推得三王法 再見吾民鼓腹年

(주: 유기송님 자료제공)

이 시를 보면 바닷가에 간척으로 이루어진 기름진 넓은 농토가 있고, 이를 부자들이 다 차지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을 읽을 수 있으며, 더욱이 삼왕(중국 고대의 세 임금, 즉 하의 우왕(禹王), 은의 탕왕(湯王), 주의 문왕(文王) 또는 무왕(武王))의 법을 회복하여 태평시절을 바라는 마음이 간절함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조선왕조실록의 인조조에 나오는 재령 해택인데 선조조에 만들어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특히, 해택(海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간척지 또는 간척지를 의미함을 확인시켜 주는 좋은 예가 되고 있다. 김성일이 돌아본 것으로 추정되는 1583년에서 40년이 지난 인조 1년인

1623년 12월 7일자 조선왕조실록 기록에 따르면 간척지의 소유에 대해 왕실의 부당한 처리를 바로잡아 국가에 소속되도록 할 것을 건의하는 신하들과 왕실의 부당함을 속으로 알면서도 어찌지 못하는 왕의 태도를 읽을 수 있다. 이 기록을 현대적인 언어로 해석할 때 다음과 같다.

“왕께서 문정전에서 《대학》을 강하셨습니다. 검토관 강석기(姜碩期)가 아뢰기를,

“봉산(鳳山)·재령(載寧) 등의 지방에 경작할 만한 해택(海澤)이 있으므로 선조(宣祖) 때에 둔전판관(屯田判官)을 보내 제방을 쌓고 농사를 지어 군량에 보탬이 되게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군자감(軍資監)에 소속시켰다가 선조 26년(1593년)에 훈련도감(訓練都監)으로 옮겼고 그 뒤에 영창대군에게 주었는데, 영창대군을 폐할 때에 이를 빼앗아 김 상궁(金尙宮)에게 주었으므로 정몽필(鄭夢弼)·박응남(朴應男)의 무리가 왕래하며 폐단을 일으켜 하나의 범죄자 소굴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박응남이 황해도 사람들의 가포(價布·부역에 나가지 않고 대신 바치는 베)를 방납(防納·상인이나 관리들이 중간에서 남의 공물을 대신 바치는 것)한다는 이유로 황해도의 백성을 동원하여 크게 제방을 쌓았으므로 백성들의 원망은 차마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인조반정 후에 감사 이명(李溟)은 백성들이 일제히 분노하여 고소하자 박응남을 잡아 가두고 목을 베려하였으나, 그 때에 이른바 종사청(從事廳)에서 감사에게 공문을 보내어 서울에 올려 보내게 하는 바람에 죽음을 면하게 되었으므로 황해도의 백성들이 지금까지 울분에 차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점은 그 땅이 관향사(管餉使)에 소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즈음 듣건대 영창대군이 받았던 곳은 대비전(大妃殿)에서

사람을 보내어 관장하게 하고, 박응남이 제방을 쌓은 곳은 달성위(達城尉)가 강제로 점유하고 있다하니, 궁방(宮房)에서 보낸 사람이 폐단을 일으켜 백성이 실망하는 것이 필시 다시 예전과 같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다시 관향사에 소속시키는 것이 마땅하니, 원하옵건대 왕께서는 대비전에 진달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왕께서 이르시기를, “달성위가 점유한 것도 반드시 까닭이 있을 것이다.”하였다.

강석기가 아뢰기를, “이것은 인가문서를 내세워 핑계대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박응남이 전에 백성을 동원하여 제방을 쌓았으니, 어찌 사가(私家)가 점유해서야 되겠습니까?” 동지사 정엽(鄭曄)이 아뢰기를, “요즈음 군병을 뽑고 있는데 군량을 조달할 계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노전(蘆田-갈대밭, 즉 간척지)에서 한 해에 거두어들이는 것이 수천 석을 밀들지 않으니, 그 쓰임이 어찌 적겠습니까? 그리고 박이서(朴彝叙)는 그의 친척이 재령 군수로 있을 때에 군대를 동원하여 이곳에 제방을 쌓았으니, 이러한 곳들도 국가에 소속시켜 군량에 보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왕께서 대답하지 않았다.

(上書講《大學》于文政殿° 檢討官姜碩期曰：“鳳山載寧等地，有海澤可耕處，宣廟朝，差屯田判官，築堰耕種，以補軍餉° 初屬軍資監，癸巳年間，移屬訓練都監，其後賜給永昌大君° 廢朝時，奪給金尙宮，故鄭夢弼° 朴應男輩，往來作弊，作逋逃之藪° 應男稱以防納本道，其人價布發一道之民，廣如築堰，民間怨謝之狀，有不忍言° 反正後，監司李溟，因民人齊瀆呈訴，捉囚應男，欲爲梟示，而其時所謂從事廳，移文監司，使之上送，仍以得免，一道至今憤鬱，而猶以爲幸者，其地還屬管餉° 近聞

永昌賜給處，則大妃殿差人下去句管，朴應男所築處，則達城尉冒占，宮差之作弊，民心之缺望，必復如前，今宜還屬管餉°願上陳達于慈殿而行之°”上曰：“達城尉之占得，亦必有由矣°”碩期曰：“此不過以立案爲辭，而應男既用民力而築之，則豈可爲私家所占哉?”同知事鄭曄曰：“近方抄出軍兵，而軍餉無策，今此蘆田一歲所收，不下數千石，其爲用豈少哉!且如朴彛叙，於其一家人爲載寧郡守時，發軍築堰°如此等處，亦宜屬公，以補軍需也°”上不答)

여기서 나오는 인조는 선조대왕의 손자이고 달성위는 선조대왕의 딸인 정신옹주의 남편, 즉 사위로 임진왜란 때 선조를 옆에서 모신 사람이다.

따라서 대비(왕의 어머니)가 달성위를 도울 수밖에 없고 인조는 어머니와 달성위의 일을 거론하는 신하들의 말에 “까닭이 있겠지”라든가 묵묵부답할 수밖에 없었다고 짐작할 수 있다.

이 기록을 보면 간척지는 노전(蘆田-갈대밭)으로도 불렸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에 있는 하구 간척지에 갈대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음에 기인한다. 지금과 같은 대규모 간척에서는 간척지와 용수의 공급이 분리되어 시행될 수도 있지만 인력만으로 시공한 조선시대의 간척은 수심이 얇고 용수공급이 쉬운 하구간척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간척지 또는 간척지는 해택으로도 불리고 노전으로도 불렸음을 알 수 있다.

수질오염신고센터

농어촌용수 수질오염 행위 발견시 한국농어촌공사(<http://www.ekr.or.kr>) 수질오염 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세요.

- ➔ 홈페이지 접속/ 고객만족/ 수질오염신고센터(☎실명확인)
- ➔ 신고내용을 육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증거자료 첨부가능)
- ➔ 신고내용 : 농어촌용수 및 농업기반시설(저수지, 담수호, 양배수장, 관정, 용배수로)에 대해 수질오염 우려가 있는 행위

※ 수질오염 신고대상 행위

- 산업폐수 무단 방류, 불법세차 행위, 수질오염 사고(유류, 폐용제 등)
- 축산폐수 무단방류 및 야적 방치, 물고기 폐사
- 기타 오염물질 불법 투기행위 등

궁금하신 사항은 ☎ 031-420-378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